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41

발의연월일 : 2025. 9. 12.

발 의 자 : 이재관・노종면・이주희
이훈기・조계원・박해철
이수진・김 윤・박지원
문정복・이정문・이병진
문진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대형마트나 병원 등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취약상권 보호와 영세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분산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세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의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26조의6제4항제2호 중 “제26조의4제5항에”를 “제26조의4제6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② (생 략)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의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의4제5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26조의4제6항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